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관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복합건물의 관리적용 대상 규정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공공복합건물의 사업추진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6조)
-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 관리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을 신축, 증·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관련부서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부서간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내 입주한 다양한 용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구민안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건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복합건물의 운영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부서의 입장이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업지연과 불가피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
----------	-----

발의년월일: 2017년 11월 일

발 의 자: 고기관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복합건물의 관리적용 대상 규정 (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다. 공공복합건물의 사업추진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6조)
- 라.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복합건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복합건축물을 개발, 신축,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둘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의 주된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복합건물 신축 및 증·개축
2. 공공복합건물의 수선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복합시설물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복합건물 신축, 증·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간 사전 의견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복합건물 사업추진) ①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업무 관련부서와 사전 협

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전반을 관장한다.
- ③ 공공복합건물의 독립적인 단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복합건물의 유지관리) ① 공공복합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정한 총괄부서장이 시행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구민의 안전한 편익도모를 위하여 건물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의 연속성 유지) 구청장은 조직변경 등에 따라, 사업지연이나 업무공백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